

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[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가.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내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자문,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등 도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나. 실태조사(안 제5조)

다.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(안 제6조)

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오늘날은 기술 패권 시대로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산업기술 분야
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, 국가 차원에서 기술유출
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기술 유출
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
- 충청북도 내에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, 이차전지산업 외에도
미래자동차산업, 드론산업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, 뿌리산업 등 산
업기술을 보유한 기업, 연구기관 등이 많이 위치해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
연구기관 등의 기술유출 예방과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
입법적 근거가 필요함

나.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
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
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
-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, 「국가첨단
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2항,
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,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
특별조치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
산업기술 보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에 근거를
두고 있음
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¹⁾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, 관계 부서(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) 협의, 필수부서 의견검토(규제영향분석, 부패영향평가 등)와 조례 안 예고(접수의견 없음)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적·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다.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제정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
- **안 제1조**는 목적 조항으로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(중소기업, 중견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)의 기술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명시함
- **안 제2조**는 산업기술과 대상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, 조례를 통해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음
 -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은 개별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, 보호대상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충분함
- **안 제3조**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함)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명시하고,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

1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,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- **안 제4조 및 안 제5조**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
 - **안 제4조**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본목표, 추진방향, 기반구축, 피해구제 지원,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사항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계획수립 시 관계 기관 등에 협조 및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**안 제5조**는 추진계획과 산업기술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수준 및 분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**안 제6조**는 이 조례의 핵심 사업인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자문,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방안 상담 지원,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
- **안 제7조**는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부기관(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 등), 수사기관(국가정보원, 검찰청, 경찰청 등) 및 관계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
- **안 제8조**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은 제정안에 대해 ‘충북도내 첨단산업 기술 유출의 선제적 대응과 기술유출 실태분석 등 기업기술보호 정책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’는 의견을 제시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함
- (타당성)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보호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으며, 최근 산업기술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규제영향분석,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